

《공고 제2020 - 9호》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2020년 제3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15.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유선연락^{*}하며 불합격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.

* 2020. 5. 15.(금) 중

구분	지원분야		응시번호
기간제	일반업무직 라급		합격자 없음
	지원업무직 라급	제한(고졸) 제한(보훈)	0123-000005 0124-000002

⇒ 서류제출 기한 내 임용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예비합격자 명단

구분	지원분야		순위	응시번호
기간제	지원업무직 라급	제한(고졸)	1	0123-000004
			2	0123-000007

* 예비합격자 유효기간: 6개월 이내

3. 최종합격자 안내 사항

□ 제출서류 (필수사항, 원본제출)

- 임용동의서
 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
 - 주민등록등본 2통
 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)
 - 가족관계증명서(기본증명서) 1통
 - 반명함판 사진(3×4cm) 5매(상반신,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)
 - 증명서류의 원본 일체
 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(비위면직자 조회용) * 반드시 자필 기재
 -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* 반드시 자필 기재
- ※ 모든 서류는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

□ 제출방법

- '20. 5. 20.(수) 15:00까지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

* 우편발송 주소: (04637) 서울특별시 종구 후암로 110, 서울시티타워 20층 인재개발팀

□ 임용예정일: '20. 6. 1.(월)

채용 관련 문의
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 : 02-6210-0134
- 응대가능시간 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 제외)

임 용 동 의 서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 직원채용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귀 원의 직원 임용절차에 동의하오며, 신원조회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신체검사 결과 또는 본인의 제반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이 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2020. . .

합격자 : (서명)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

<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>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규채용 (예정)직원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조회하고자,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

- 비위면직자 등인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본인확인

2. 개인정보 수집항목

- 수집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

3.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

-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.
-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전조회는 비위면직자 등인지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주민등록번호 : _____

성 명 : _____ (서명)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□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· 임용 · 교육훈련 · 복무 · 보수 ·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 -----□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-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· 관리 ·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: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 · 여비 부당수령 :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-----□
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-----□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--□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-----□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)

※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(증복적용 안됨)

년 월 일

지원자

(인)